

물질안전보건자료

MATERIAL SAFETY DATA SHEETS(MSDS)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			Product Identification	
가. 제품명	국문	난-스라그 씨티-851	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	
	영문	NON SLAG CT-851	○ 제조자/제조사명	우원양행(OEM)
PART NUMBER	CT-851		○ 수입자/수입회사명	
ITEM NUMBER	00851-01		주 소	
일반적 특성	분사 형의 용접 스톱 이형제		○ 공급자/공급회사명	(주)지에이치아이
유해성 분류	유해물질, 자극성물질		주 소	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	용접 스톱의 제거 및 이형	정보제공서비스/전화번호	TEL: 052-298-2259 (09:00~18:00)	
		담당부서 및 성명	부설연구소/ 신혜란	
		최초작성일자	2000.5.1	

2. 유해, 위험성		Hazardous Ingredients	
가. 유해성, 위험성 분류 : 인화성 가스 : 구분1 / 인화성 액체 : 구분3 / 고압가스 : 액화가스 피부 부식성, 피부 자극성 : 구분2 / 심한 눈 손상성, 눈 자극성 : 구분2 발암성 : 구분2 / 생식독성 :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1 / 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 : 구분1 흡인 유해성 : 구분1,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2			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			
○ 그림문자:			○ 신호어 : 위험
○ 유해, 위험문구	- H220 극인화성 가스 -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- H280 고압가스 포함 ;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-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. -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-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. -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킴 -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		
○ 예방조치문구	예방문구/ 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. 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 - P210 열, 스파크,, 화염, 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. - 금연 -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십시오. - P241 폭발방지용 전기, 환기, 조명, 장비를 사용하십시오. -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십시오. - P243 정전기 방치 조치를 취하십시오. - P260 (분진, 흙, 가스, 미스트, 증기, 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 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 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 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 - P280 (보호장갑, 보호의, 보안경, 안면보호구)를 착용하십시오. - P281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		
	대응문구 - P301+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 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. 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십시오. 피부를 물로 씻고 샤워하십시오. 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. 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계속 씻으시오. 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,조언을 구하십시오. - P309+P311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 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 -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. - P322 필요한 조치를 하시오. 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. - P370+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십시오. - P377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. - P381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		

○ 예방조치문구	저장문구 - P410+P403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	폐기문구/ P501 (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다. 유해,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, 위험성 (예:분진폭발위험성) (NFPA) : 보건 - 1 / 화재 -3 /반응성 - 0	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			Compositional Information
화 학 물 질 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NO.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디아세톤 알코올	ACETONYL DIMETHYL CARBINOL	123-42-2	1 ~ 10
중방향족 용제 나프타		64742-94-5	30 ~ 40
Castor oil		74-98-6	1 ~ 10
프로페인(PROPANE)	다이메틸메테인(Dimethylmethane)	106-97-8	35 ~ 45
그 외 물질: 영업비밀			1 ~ 10

4. 응급조치 요령		Emergency Measure
가. 눈에 들어갔을 때	눈에 물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. 계속 씻으시오.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	
나. 피부에 접촉 했을 때	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	
다. 흡입 했을 때	토하게 하지 마시오.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	
라. 먹었을 때	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 토하게 하지 마시오.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 장비를 이용하십시오	
마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	의료 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	

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		Fire & Explosion Hazard
가.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:	-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 시 알콜 포말, 이산화탄소 또는 물 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 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	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(예,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) :	- 극산화성 가스 / 고산화성: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.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	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:	-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십시오	

6.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		Exposure Control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	-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	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	-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 수로, 하수구, 지하실,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	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	- 불활성 물질(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)로 덮지른 것을 흡수하고,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.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십시오. 소량 누출 시 모래,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.	

7. 취급 및 저장방법		Handling & Storage Methods
가. 안전취급요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 -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. -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 -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 - 압력을 가하거나, 자르거나, 용접, 납땜, 접합, 뿔기, 연마 또는 열에 폭로, 화염, 불꽃,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. - 취급/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. -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. - 고온과 열에 주의하십시오. -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, 공기 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. 	
나. 안전한 저장 방법 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- 금연 -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 	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		Personal Protection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 기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노출기준: 디아세톤 알코올: TWA - 50ppm 240mg/m³ 중방향족 용제 나프타: 자료없음.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: TWA : 5 mg/m³ STEL : 10 mg/m³ 그 외 물질: 자료없음. - ACGIH 노출기준: 디아세톤 알코올: TWA - 50ppm 중방향족 용제 나프타: 자료없음.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: TWA : 5 mg/m³ 그 외 물질: 자료없음. 	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격리,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,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. -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십시오. 	
다. 개인보호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호흡기 보호: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○ 눈 보호: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.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십시오 ○ 손 보호: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내화학성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. ○ 신체보호: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내화학성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	

9. 물리화학적 특성		Physical Chemical Characteristic	
가. 외관 (물리적 상태, 색 등)	연미색 액체	카. 증기압	4.5(등유)
나. 냄새	약한 석유 냄새	타. 용해도	물에 불용해
다. 냄새역치	자료 없음.	파. 증기밀도	자료 없음.
라. 수소이온농도(pH)	자료 없음.	하. 비중	0.82±0.05
마. 녹는점/어는점	해당 없음.	거. n 옥탄올/물 분배계수	자료 없음.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350-525F(177-274°C)	너. 자연발화 온도	510F(250°C)
사. 인화점	200F(90°C)	더. 분해온도	자료 없음.
아. 증발속도	자료 없음	러. 점도	1.65cSt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	기체(가연성)	머. 분자량	자료 없음.
차. 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	자료 없음	버. 휘발율	자료 없음.

10. 안정성 및 반응성		Stability & Reactivity Data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인화성: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- 고압가스 포함 ;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- 일부 물질은 고농도로 흡입 시 자극적일 수 있음 - 화재시 자극성, 부식성,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	
나. 유해반응의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 	
다. 피해야할 조건(정전기 방전, 충격, 진동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- 금연 	
라. 피해야할 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 산화성물질. 	
마.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	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Toxicological Information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.
- 증기 흡입 및 섭취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.

나. 건강유해성정보

- 급성독성(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):
 - 경구 독성: 분류되지 않음
(디아세톤 알코올 : LD50 2520 mg/kg Rat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: LD50 > 5000 mg/kg Rat
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LD50 30000 mg/kg Rat / 그 외 ; 자료없음)
 - 경피 독성: LD50 > 2000 mg/kg Rabbit
(디아세톤 알코올 : LD50 13630 mg/kg Rabbit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LD50 > 2000 mg/kg Rabbit
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LD50 25000 mg/kg Rabbit / 그 외 ; 자료없음)
 - 흡입 독성: 분류되지 않음
(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미스트 LC50> 0.59mg/l 4 hr Rat /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미스트
LC50 > 10.62 mg/l Rat / 프로페인 ; 분진 LD50 570000 ppm 15 min Rat / 그 외 ; 자료없음)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: 약한 자극이 있음
(디아세톤 알코올 : 토끼에 대한 자극성 시험 결과 - 중정도 자극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약한자극 (rabbit) /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약한자극(500mg, 24시간, rabbit) / 프로페인 : 자료없음 (EU Directive 67/548). rabbit,irritating 래빗,자극(IUCRID) / 그 외 ; 자료없음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: 약한 자극이 있음
(디아세톤 알코올 : 토끼에서 완만한 또는 심한 자극이 있으며, 인간에서 자극이 있다고 보고됨.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약한자극(rabbit) /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약한자극(500mg, 24시간, rabbit) / 프로페인 ; 자료없음(EU Directive 67/548/EEC). Rabbit,not irritating 래빗,무자극(IUCRID) / 그 외 자료없음)
- 호흡기 과민성; 자료 없음.
- 피부 과민성: 비과민성
(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: 비과민성(Guinea Pig) /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 과민성 시험 결과 - 음성 / 그 외 ; 자료없음)
- 발암성:
 - 산업안전보건법, OSHA, EU CLP ; 자료없음
 - 노동부고시 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2 / 그 외 ; 자료없음
 - IARC 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Group 3 / 그 외 ; 자료없음
 - ACGIH 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A3 / 그 외 ; 자료없음
 - NTP 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R / 그 외 ; 자료없음
- 생식세포변이원성: 분류되지 않음.
: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in vitro, in vivo 변이원성 시험결과 음성 / 그 외 ; 자료없음
- 생식독성: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.
(디아세톤 알코올 : 동물의 생식능에 있어 수태율, 착상률, 분만률, 2세대 출생 생존율의 감소 경향이 보고됨. /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어미 동물에게 영향이 없는 용량범위에서도 차세대에게 생식적 영향이 보고됨. / 그 외 ; 자료없음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: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
(디아세톤 알코올 : 사람에서 기도 자극과 폐결핵, 흰쥐 경구투여에서 간장 이상이 보고됨.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자료없음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: 장기간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줌.
(디아세톤 알코올 : 사람에서 네프로제 증후군이 보고됨.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: 자료없음/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: 반복 노출 시 실험동물(흰쥐)에게서 간, 정소, 신장 및 심폐 조직에 영향, 저지질혈증 등에 영향을 미침 / 프로페인 ; 자료없음(EU Directive 67/548/EEC). Central nervous system:신경계 영향(TOMES) / 그 외 ; 자료없음)
- 흡인 유해성: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.
(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흡인시 유해유력/ 그 외 ; 자료없음.)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		Ecological Information
가. 생태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 류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LC50 0.3 mg/l 96 hr / 디아세톤 알코올 ; LC50 420 mg/l 96hr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LC50 45 mg/l 96 hr Pimephales promelas () 프로페인; LC50 > 100 mg/l 96 hr 기타 (시험종 : Fish Tlm) / 그 외 ; 자료없음 ○ 갑각류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EC50 0.133 mg/l 48 hr Daphnia pulex / 프로페인 ; LC50 52.157 mg/l 48 hr / 그 외 ; 자료없음 ○ 조 류: 프로페인 ; LC50 32.252 mg/l 96 hr / 그 외 ; 자료없음. 	
나. 잔류성 및 분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잔류성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log Kow 5.03 /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log Kow 6.1 ~ 2.9 (추정치) / 프로페인 ; log Kow 2.36 / 그 외 ; 자료없음. ○분해성: 자료없음. 	
다. 생물 농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물농축성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BCF 840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136 ~ 159 (Jordanelia floridae(Fish, fresh water), 1mg/l) / 프로페인 ; BCF 13 / 그 외 ; 자료없음 ○ 생분해성: 디(2-에틸헥실)프탈레이트 ; 62 (%) 28 day / 디아세톤 알코올 ; 100 (%) 14 day (호기성, 쉽게 분해됨) / 중 방향족 용제 나프타: 39(%) 28 day (호기성, 활성 슬러지, 가정 하수, 쉽게 분해되지 않음) / 프로페인 ; 65.7 (%) 35 day / 그 외 ; 자료없음 	
라. 토양 이동성	자료 없음.	
마. 기타 유해 영향	자료 없음.	

13. 폐기시 주의사항		Disposal Methods
가. 폐기방법	-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.	
나. 폐기 시 주의사항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.)	- (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.	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		Transport Information
가. 유엔번호	- 자료없음.	
나. 유엔 적정 선적명	- 자료없음.	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	- 자료없음.	
라. 용기 등급	- 자료없음.	
마. 해양오염물질	- 자료없음.	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	-관련 법규에 준함.	

15. 법적 규제현황		Regulatory Information
선박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	- 노출기준설정물질, 공정안전보고서 (PSM)제출대상,유해,위험물질	
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	- 기존화학물질	
유해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	- 해당없음.	
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	- 지정폐기물	
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	- 해당없음.	

16. 기타 참고사항		Reference Items
<p>자료의 출처: 본 MSDS는 공급원인 (주)지에이치아이가 2018년5월31일 제조원인 우원양행의 자료와 관련자료 및 GHI 연구소의 실험결과 치를 GHS(Globally Ha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Chemicals)/UN 권고지침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-37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내관련 규제 법규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고 자료의 출처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, NCIS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된 것입니다.</p> <p>최초작성일: 2000.5. 1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: 9회 2017.8.1. 전면개정일: 2018.5.31.</p>		

본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1항과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, 제92조의2부터 제92조9까지, 별표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, 경고표시,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작성 된 것이며,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치료목적이거나 또는 근로자건강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시켜서는 안되며 본 MSDS는 사용업체 및 사용자에게 지원하기위한 참고자료로서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,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